

# 2023년 2분기 재난안전관리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 '23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## □ '23.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1건, 475백만원

※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예비비를 재배정 받아 집행함

### ○ 간접비 청구의 소 : 판결금 및 이자 475백만원

#### 【 소송 개요 】

- ◆ 사 건 명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8459 간접비 청구의 소
- ◆ 당 사 자 : (원고) 한신공영 외 1  
(피고) 서울특별시
- ◆ 사건개요 : 우리시 발주공사 '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 공사'관련 원고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연장된 1차수 공사기간 197일에 대하여 간접공사비 청구의 소를 제기
- ◆ 판결결과 : 원고 청구 일부 인용(우리시 90% 패소)
- ◆ 패소사유 : 1차수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, 설계변경으로 총공사비가 증액된 과정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, 인정금액 90%제한

### ○ 소송 판결 주요 내용

- 1차수 공사기간 연장사유인 지장수목 처리방안 협의 지연, 간섭 지장물 추가 발생, 「월드컵대교~서부간선 직결램프 공사」와의 간섭으로 인한 가교시공 일시중지 등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
- 원고들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완료하였고, 단순 설계변경 합의서 작성으로 추가 간접비 포기에 합의하였다 보기 어려움
-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공사비가 증액된 과정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정금액을 90%로 제한

○ 항소 포기 사유

- (법률지원담당관 결정)

- 공기연장에 대한 귀책사유 없고, 원고들이 1차수 공기연장에 대해 준공전 적법하게 신청한 점 등 소송 쟁점에 대해 추가 반박 입증자료 없음
- 간접비에 대하여 10% 감액이 이루어진 점, 소송 장기화에 따른 지연손해금 부담 가중 등 경제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 포기 결정

- (소송대리인(변호사) 의견) 항소 실익 없음

- (부서 검토 의견) 항소 실익 없음

○ 따라서 우리 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림 (항소포기 방침, 법률지원담당관-7671호, 2023.5.9.)

○ 사건 확정 및 원고의 판결금 청구에 따라 이자로 인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신속하게 지급함

(단위: 원)

부서	세부사업명	통계목	지출액	지출일
계			475,185,520	
교량안전과	성산대교 성능개선	배상금 등 (305)	475,185,520	'23.6.23.

※ 청구금액 세부 내역

원고	계(원)	판결금(원)	이 자(원)			비고
			계	'19.1.11. ~'23.4.19. (연 6%)	'23.4.20. ~'23.6.23. (연 12%)	
계	475,185,513	371,940,300	103,245,213	95,318,617	7,926,596	
한신공영(주)	242,344,612	189,689,553	52,655,059	48,612,495	4,042,564	51%
(주)홍용종합건설	232,840,901	182,250,747	50,590,154	46,706,122	3,884,032	49%

※ 7원은 서울시 단수계좌에 입금하여 총 475,185,520원 지출